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안내사항

(중앙방역대책본부, '20.2.20(목)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고려 사항과 신고대상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향후 발생 상황 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,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변경

## I. 개요

### 1. 법적근거

-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는 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'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'을 적용하여 대응

###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정보

정 의	• SARS-CoV-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
질병분류	• 법정감염병 :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• 질병 코드 : U07.1
병원체	• SARS-CoV-2 :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
전파경로	• 현재까지는 비말,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-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-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짐
잠복기	• 1~14일 (평균 5~6일)
진단기준	• 환자 :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: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, 특이 유전자 검출
증상	• 발열, 인후통,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
치료	• 대증 치료 : 수액 보충,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•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
치명률	• 치명률은 1~2%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• 단, 고령,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,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, 사망 초래
관리	<환자 관리> • 표준주의, 비말주의, 접촉주의 준수 •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 <접촉자 관리>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
예방	• 올바른 손씻기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, 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후, 기저귀 교체 전후, 코를 풀거나 기침, 재채기 후 등 실시 • 기침 예절 준수 :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 가리지,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•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 만지지 않기

## II. 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 조치사항 안내

1. (평상시) 의료진은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(내원자 안내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여 환자가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.
  - 검체 채취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및 약 처방 후,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안내
  - 선별진료소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
→ [http://ncov.mohw.go.kr/index\\_main.jsp](http://ncov.mohw.go.kr/index_main.jsp) "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"

### 3. 해외 여행력 확인

- 가. (환자 접수단계)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(건강보험 자격조회), ITS를 통해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\*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해외 여행력,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, 확진 환자 접촉 여부 등
  - 외국인 방문이 많은 경우, 단기체류 외국인(여권소지)의 경우 별도 ITS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여권번호로 조회

※ 심평원 홈페이지[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/모니터링/DUR정보/DUR안내/자료실(246번)] 참조

**< 해외여행력 정보제공(DUR/ITS) 대상 국가·지역 >**  
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일본, 대만, 말레이시아

\* ITS(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, DUR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

- 나. (환자 진료, 처방단계) ITS, DUR을 통해 문진, 처방 시 해외 여행력 재확인해야 합니다.
- \* ITS, DUR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해외 입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진을 통한 해외 방문력 재확인 필요(예: 타국가 경유 입국자 중 타국가에서 새로 발권한 경우)
- 다. 환자의 해외 여행력(방문/체류 등)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흡기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독립된 공간(문이 닫힌 개인실 등)에서 진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

\* 감염예방 표준주의 준수

\* 검체 채취 시, N95 등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개인보호복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(부록 2 참조)

마. (신고) **확진환자, 의사환자**를 진료하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로 구두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합니다.

- **확진환자**  
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
※ 진단검사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
- **의사환자**
  - ①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  -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  -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**원인미상 폐렴**인 자
- **조사 대상 유증상자**
  -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·지역\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 
\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수시 변동가능
  -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\*

\* 사례)

- 1)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3)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
- 4)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의심되는 자

< 신고 대상 >

1.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2.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+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3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+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4.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
5.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·지역\* 방문 +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6.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
\* 일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

□ 발생신고

- 신고대상 : **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 대상 유증상자**
- (의료기관) 내원한 환자가 사례정의(국의 방문력, 확진환자 접촉력, 임상증상)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

- (의사환자) 신고서의 비고(특이사항)란에 의사환자의 구분을 입력

**[의사환자 구분]**

- 의사환자 1 :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
- 의사환자 2 :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
- 의사환자 3 :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폐렴

- (조사 대상 유증상자) '의사환자'를 선택하고 신고서의 비고(특이사항)란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을 입력

**[조사 대상 유증상자 구분]**

- 조사 대상 유증상자 1 :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 국가·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
- 조사 대상 유증상자 2 :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

바. (진단 검사) '의사환자', '조사 대상 유증상자'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\* 시행

**👁 [부록 3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가능 기관**

- 보건소 신고 후,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 시행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

- 의사환자,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해당되면 환자에게 검체 검사비 징수 불필요 (추후 건강보험 공단 또는 지자체 등을 통해 정산 예정)

\* 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보시스템(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)을 통해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사례에 한함

※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'신종코로나바이러스[실시간역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법]검사의 급여기준(복지부 고시 제2020-31호)' 참고

## 《 신고 및 조치 절차 흐름도 》

### □ 의사환자



## □ 조사 대상 유증상자

<b>① 신고대상 확인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외 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확인 (수진자 자격조회/ITS/DUR 시스템 정보 확인 및 해외여행력 문진)</li> <li>• 직업 등 확인</li> <li>•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(필요시 흉부 방사선촬영 등)</li> </ul>
<b>신고대상 해당 시</b>
<b>② 보건소 신고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할 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고</li> </ul>
<b>③ 진료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독립된 공간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의료적 처치 실시</li> </ul>
<b>④ 검체채취 및 검사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독립된 공간에서 상·하기도 검체를 채취하여 자체 또는 수탁검사기관을 통한 검사 시행 * 검체 채취 시 N95 등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, 긴팔 일회용 가운, 고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</li> <li>• 환자가 머문 독립된 공간 소독 (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, 대기 의자, 접수창구, 진료실 의자 등)</li> </ul>
<b>⑤ 조치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보건교육* 실시</li> </ul>
<b>⑥ 검사결과 확인 및 알림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검사기관에서 최초 신고기관으로 결과 통보</li> <li>• <b>최초 신고기관</b>은 양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(043-719-7790, 7979)로 즉시 유선통보</li> <li>• 결과가 음성인 경우 보건교육* 실시</li> </ul>

### \* 보건교육

-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,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
- 대중교통 이용자제
-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
-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, 기침예절 준수
-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
-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

### Ⅲ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인 요청사항

#### 1. 본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

- 의료인력 및 종사자(간병인 포함)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(손씻기, 기침예절, 보호구착용)
- 원내 감염감시 및 예방조치 철저
  - \* 면회객 제한 및 병원 상황에 맞는 감염예방 관리 대책 마련
  - \* 중국 등을 다녀온 직원은 14일간 증상발생 모니터링, 업무배제권고
  - \* 올바른 손씻기, 기침예절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

#### 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여주십시오

- 의심환자 (해외방문력, 확진환자 접촉력, 호흡기 증상 등)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선별구역에서 대기
-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
  - \*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
  - \* 선별진료소 현황 : [http://ncov.mohw.go.kr/index\\_main.jsp](http://ncov.mohw.go.kr/index_main.jsp) "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"

#### 3.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문진\*,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(건강보험 자격조회)/ITS(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) /DUR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하게 해주십시오.

- \* 해외 여행력,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환자와 접촉여부 등

#### 4.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신고

- (의사환자)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로 구두 또는 유선 보고 및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
- (조사 대상 유증상자)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

#### 5. 발열, 호흡기 증상자 진료시 감염 예방 조치를 준수해 주십시오.

- 가. 원내 손소독제, 마스크 비치
- 나. 의료진은 개인보호구(마스크, 일회용장갑 등) 착용 등 수칙 준수
- 다.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(수술용) 마스크를 착용시킴
- 라. 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
- 마.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
- 바.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또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,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
- 사.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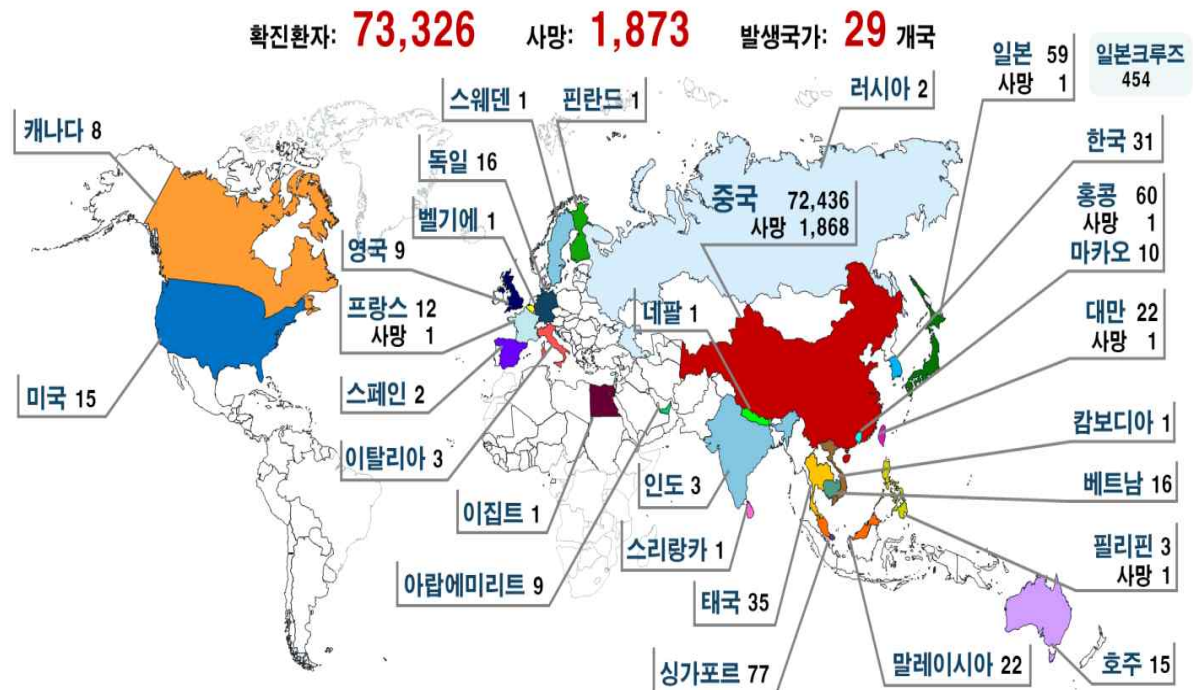
#### 6. 응급실 운영기관은 의심환자 선별, 응급실 출입제한,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을 다 해주십시오

- \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6판) 지자체용」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([www.cdc.go.kr](http://www.cdc.go.kr))에서 다운로드 가능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국가**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발생이 보고된 국가

**<'20.2.18. 9:00 기준>**



출처: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

\* 매일 9시, 16시 기준 업데이트 자료 참고

(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ncov.mohw.go.kr/index\_main.jsp)>발생동향

**여행 시 노출력 고려사항**

- 여행 시 해외 여행, 거주·체류자 및 유증상자와 접촉
- 여행 시 외국인 참석이 많은 행사 참석(밀폐된 공간) 등

**임상증상**

-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 있을 경우



## 부록 2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

상황, 행위	개인보호구						
	호흡기 보호			전신 보호			눈 보호
	수술용 마스크	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장갑 <sup>1)</sup>	긴팔 가운	전신 보호복 (덧신포함)	보안경 (또는 안면보호구)
검역(역학조사)		●		●		●	●
선별데스크		●		●	●		
격리진료소 접수, 안내		●		●	●		
격리진료소 진료, 간호		●		●		●	●
이송(구급차 운전자 <sup>2)</sup> )		●		●			
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		●		●		●	●
구급차 소독		●		●		●	●
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		●		●		●	●
에어로졸 생성 처치 <sup>3)</sup>			●	●		●	●
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			●	●		●	●
<b>호흡기 검체 채취</b>			●	●		●	●
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 <sup>4)5)</sup>		●	●	●		●	●
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				●			
사체 이송, 안치		●		●		●	
병실 청소·소독		●		●		●	●
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		●		●		●	●
의료폐기물 운반	●			●	●		

- 1) 의심·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, 처치, 간호, 검사,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,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**이중장갑 착용**
- 2)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(덧신포함),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(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) 착용
- 3) **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**는 기관삽관(endotracheal intubation), 심폐소생술, 기관지내시경술, 기도분비물 흡인, 기관관리(tracheostomy care), 사체부검, 비침습적 양압환기(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), 분무요법(nebulizer therapy),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, 상황, 행위를 말함
- 4) 검체 취급 실험실·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, 사용,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(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)에 따름
- 5) Class II 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(긴팔), 일회용 장갑 착용  
Lee H, Ki C-S, Sung H, et al.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. Infection & chemotherapy. 2016;48(1):61-69.

**부록 3**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가능 기관 (총 46개소)**

※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 - 알림·자료 - 공고/공시에서 변동정보 참고

**[수탁검사기관 : 8개소]**

순번	지역별	기관명	주소	대표연락처
1	서울	(의)삼광의료재단	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뚝로41길57	02-3497-5100
2		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	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	1566-6500
3	부산	씨젠부산의원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	1566-6500
4	인천	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(송도동 13-49)	1600-0021
5	경기	(재)서울의과학연구소(SCL)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로 13 흥덕11밸리 A동	1800-0119
6		녹십자의료재단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	1566-0131
7		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	031-628-0700
8		선함의원(에스큐랩, SQLab)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-2 (중동) 선함빌딩	031-283-9270

**[의료기관 : 38개소]**

※ 선별진료소(●), 24개 : 방문 시 진료 및 검사 가능

※ 국가지정격리병상(◎), 14개 : 격리환자 진료 및 검사

순번	시도	기관명	선별 (24개)	국격 (14개)	주소	대표연락처
1	서울	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	●	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	1588-1511
2		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	●	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	1811-7755
3		강동경희대학교병원	●		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	1577-5800
4		강북삼성병원	●	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	1599-8114
5		고려대학교 구로병원	●		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	02-2626-1114
6		고려대학교 안암병원	●		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	1577-0083
7		국립중앙의료원		◎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	02-2200-7114
8		삼성서울병원	●		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	02-3410-2114
9		서울대학교병원		◎	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	1588-5700
10		서울아산병원	●	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	1688-7575
11		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	●		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	02-870-2114
12	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		◎	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	02-2276-7000
13		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	●		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	02-709-9114
14		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	●	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	1599-6114
15		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	●	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-1	1599-1004
16		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	●		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	1666-5000
17		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	●		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	02-950-1114
18		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	●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	02-829-5114
19	부산	부산대학교병원		◎	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	051-240-7000
20	인천	길의료재단길병원		◎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(구월동)	1577-2299
21	광주	전남대학교병원		◎	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	1899-0000
22	대전	충남대학교병원		◎	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	1599-7123
23	경기	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	●		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	1661-7500
24		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	●	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	1577-7516
25		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	●	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	1577-0013
26		명지병원		◎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(화정동)	031-810-5114
27		분당서울대학교병원		◎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	1588-3369
28		분당차병원	●	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	1577-4488
29		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	●		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	1899-5700
30		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	●		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	1522-2500
31	강원	강릉아산병원	●		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	033-610-4111
32		강원대학교병원		◎	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	033-258-2000
33	충북	충북대학교병원		◎	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(개신동)	042-200-6114
34	충남	단국대부속병원		◎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	1588-0063
35	전북	전북대학교병원		◎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	1577-7877
36	경남	양산부산대학교병원	●	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	1577-7512
37	제주	제주대학교병원		◎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15 (아라일동)	064-717-1114
38		제주하라병원	●	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	064-740-5000